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접생산확인 취소 제도 정비〉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19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직접생산확인 취소 제도 정비(안 제11조제2항 등)	3
※ 참고자료	11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11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제도」	14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물품목록 번호 체계」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9.
3. 회부연월일 : 2025.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며, 과징금 및 벌칙의 부과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가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됨에 따라, 위반하지 아니한 제품까지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일시적인 수요 폭증이나 부품 공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어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되, 조사 결과 2개 이상의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이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직접생산확인 취소 제도 정비(안 제11조제2항 등)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① (생략)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u>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u>	3. ----- ----- <u>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납품한 경우</u>
<신 설>	4.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4. 5. (생략)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③ ----- -제4호 및 제5호에----- -----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

1. 2. (생략)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단서 신설>

<신설>

----- · 제3호 및 제6호에 -----
-----.

다만,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동시에 2개 이상의 제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재차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항제3호에 -----
-- 해당 -----.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동시에 2개 이상의 제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재차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4.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

4.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이내 ⑥ ~ ⑧ (생략) 제11조의2(과징금)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 ② . ③ (생략) 제35조(벌칙) ① (생략) ②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③ (생략)	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5. 제2항제6호에----- ----- -----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과징금)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4호 및 제11조 제3항 단서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6개월간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재신청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이나 직접생산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하도급생산 납품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되, 직접생산 이행여부 등의 조사 결과 2개 이상의 제품에서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위반이 적발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의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과징금 및 벌칙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공공기관 입찰 및 납품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자격과 능력이 있는 제조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실제 제조 역량이 없는 부적격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행 지체 및 대체 납품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저가 수입제품 납품 및 낙찰 후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¹⁾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납품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임.

현행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현재 총 616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38개 대분류, 96개 중분류, 207개 소분류, 493개 세분류의 체계로 분류되어 있음.²⁾

그런데 현행 제도에 따르면 616개 품목 중 특정 품목에 해당하는 1개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외에 615개 제품에 대해서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구조로, 이 경우 위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 외에도 과징금 부과·형사처벌 등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제재 수준이 과도하여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하도급 생산으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되, 복수의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경쟁제품을 지정함.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간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게 됨.

2) 참고자료 3(p.16) 참조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일시적인 수요 폭증이나 부품 공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어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³⁾

한편,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위헌소원 심판에서 복수의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어느 한 제품에 하청생산 납품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이외의 다른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면, 부당한 행위를 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신뢰성과 중소기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자체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일관되게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음.⁴⁾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 생산 및 납품의 경우 하청업체에 구체적인 생산 범위와 공정을 직접 지시해야 하는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타사의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자사 직접생산 제품에 타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비해 고의성이나 위반

3)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4) 2015. 9. 24. 선고 2013헌바393 결정, 2018. 11. 29 선고 2016헌바353 결정, 2023. 2. 23. 선고 2019헌바163 결정.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직접생산 의무 위반 행위 중 하도급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해당 제품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준을 완화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음.

아울러 하도급 생산품을 납품한 경우에 위반 제품에 대해서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면 나머지 615개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가능하므로 취소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직접생산 확인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현행 직접생산 확인취소제도는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해당 생산자의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 유형에 따라 취소되는 제품 분류군을 세분화하여 유사성이 있는 제품군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음.

따라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도입 목적 및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라는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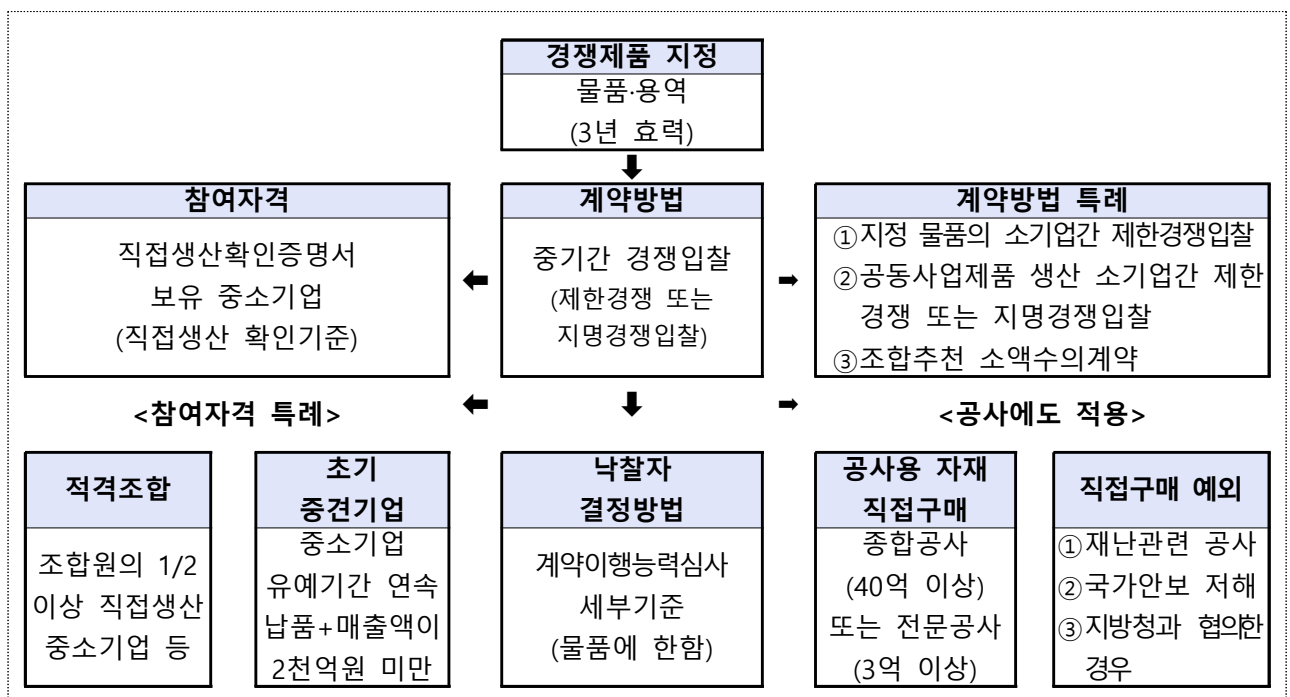
□ 제도개요

- (개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0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 (제품)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되며, '25~'27년간 유효한 경쟁제품 616개 지정 고시 ('24.12)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개관 >



□ 제도연혁

-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65년 공공기관이 특정 중소기업 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단체수의계약 제도 시행

- 경쟁이 배제된 환경에서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제도의 특성으로 가격 담합, 품질 저하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

-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품질 개선과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07년부터 중기간 경쟁제도 도입

<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중기간 경쟁입찰 연혁 >

단체수의계약 (1965~1994년)	단체수의계약+중기간 경쟁입찰(1995~2006년)	중기간 경쟁제도 (2007년~)
•'65년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제도 도입 (예산회계법 도입) •'81년 조합과 단체수의계약 확대	•'95년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중기간 경쟁입찰 병행 운영 •'99년 단체수의계약 제품수 축소	•'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중기간 경쟁입찰로 전면 전환

* '04년 단체수의계약 폐지하고 '05년~'06년 2년간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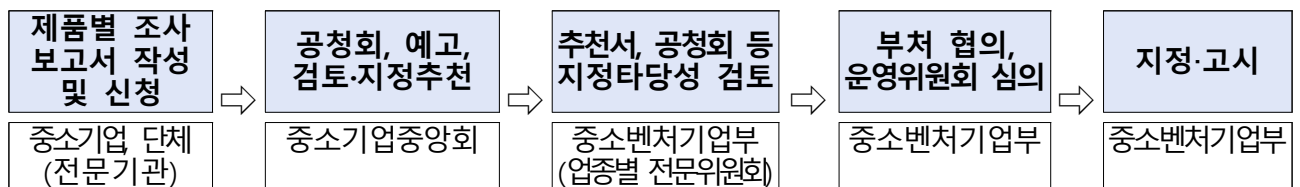
□ 지정원칙

- 국내 제조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필요성과 관련 산업 및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 경쟁제품 지정요건 및 절차

- (요건) ①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
및
②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 10개 이상
- (절차) 중기중앙회의 추천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민관 합동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절차 >



□ 판로지원 효과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은 '08년 13,633개사에서 '24년 **41,300개**사로 3배 이상 증가, **29.3조원의 판로지원**('24년 기준)

< 연도별 판로지원 실적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조달실적(조원)	18.7	19.2	20.6	22.1	24.2	26.4	28.0	29.3
직접생산 기업개	26,391	28,703	28,497	32,285	32,396	37,561	38,239	41,300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제도」

□ 목적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616개)을 구매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대기업 제품 및 하청생산 납품 등을 차단하여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이를 통한 국내 제조기반 경쟁력 강화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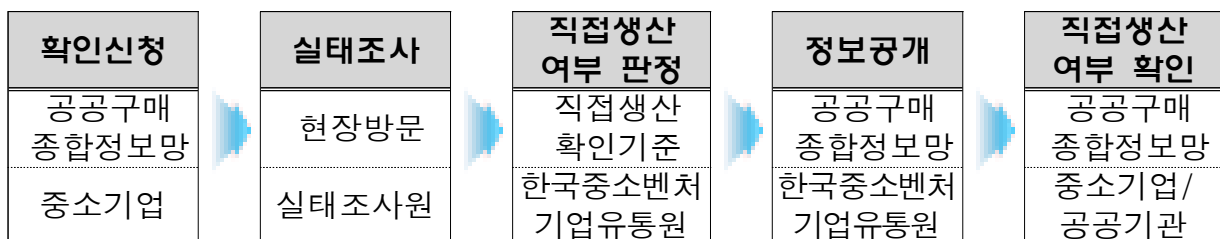
□ 세부 절차

- 제품별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 인력 · 설비 · 공정 등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실태조사원이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0호)

-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업 수('25. 12월말 기준) : 58,095개사

< 직접생산 확인 절차 >



□ 위반시 제재

- 부정발급, 하청생산 등 직접생산 위반내용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직접생산 위반 유형별 제재 >

위반내용	취소 대상	재신청 금지
• (1호)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	모든 제 품	1년
• (2호) 생산시설 매각 등 기준미달	위반 제 품	6개월
• (3호) 하청, 타사 상표 부착하여 납품	모든 제 품	6개월
• (4호) 조사 거부	모든 제 품	6개월
• (5호) 재신청 사유 미준수	위반 제 품	3개월 이내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물품목록 번호 체계」

□ 관련 법령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목록화지침」

□ 분류 구조

- 물품분류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인 ‘대분류(2자리)-중분류(4자리)-소분류(6자리)-품명분류(8자리)-세부품명(10자리)’로 구성
- 중기간 경쟁제품은 세부품명 10자리 기준으로 운영

□ 중기간 경쟁제품 분류 요약(616개 제품)

- 중기간 경쟁제품은 96개 중분류(4단위), 세부품명 616개로 분류되어 중분류 당 평균 세부품명이 6.4개*로 분류

< 중기간 경쟁제품 분류 요약 >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부품명번호
개수	38개	96개	207개	493개	616개

☞ 예시 설명 : 의류(중분류, 4자리)는 근무복 등 세부제품(10자리) 21개가 분류됨

대분류(2자리)		중분류(4자리)		소분류(6자리)		세분류(8자리)		세부제품(10자리)	
번호	대분류명	번호	중분류명	번호	소분류명	번호	세분류명	번호	세부품명
53	의류,가방및 개인관리용품	5310	의류	531018	코트및재킷	53101802	남성용외투	5310180201	남성용외투
				531023	속옷	53101804	여성용외투	5310180401	여성용외투
						53102301	속셔츠	5310230101	속셔츠
						53102303	팬티	5310230302	팬티
				531024	양말류	53102399	내복	5310239901	내복
						53102402	양말	5310240201	양말
				531025	의류액세서리	53102501	허리띠또는멜빵	5310250101	허리띠
								5310250102	수납벨트
								5310250401	장갑
				531027	유니폼	53102701	군복	5310270101	전투복
								5310270102	군용근무복
								5310270103	군용정복
								5310270105	군용외투
								5310270108	군용전투조끼
						53102702	정복	5310270201	남자정복
								5310270202	여자정복
						53102710	사원복	5310271001	근무복
								5310271003	작업복

대분류(2자리)		중분류(4자리)		소분류(6자리)		세분류(8자리)		세부제품(10자리)	
번호	대분류명	번호	중분류명	번호	소분류명	번호	세분류명	번호	세부제품명
						53102799	기동복	5310279901	기동복
				531029	운동복	53102901	여성용운동복	5310290101	여성용운동복
						53102902	남성용운동복	5310290201	남성용운동복
		5312	가방,핸드백및유사제품	531215	여행가방	53121503	개인용소형가방	5312150301	개인용소형가방
						53121599	의류대	5312159901	의류대
				531216	지갑,핸드백 및일반백	53121603	배낭	5312160301	배낭